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 시 협 약



2005. 12. 23

무 안 군
(가칭)무안환경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의)	1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8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8
제 5 조 (사업시행범위)	8
제 6 조 (무상사용기간)	9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9
제 8 조 (보험가입)	9
제 9 조 (업무감독)	10
제 10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10
제 11 조 (출자자의 변경)	11
제 12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11
제 13 조 (협약의 성실이행)	11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4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2
제 15 조 (총사업비 변경)	12

제 4 장 실시절차

제 16 조 (법인설립과 출자)	13
제 17 조 (실시계획의 승인)	14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공사비)	14
제 19 조 (공사기간)	14
제 20 조 (공사의 착수)	15
제 21 조 (공정보고)	15
제 22 조 (본 사업부지에 대한 매타적 점유권)	15
제 23 조 (위험물의 발견)	16
제 24 조 (유물의 발견)	16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17
제 26 조 (사업이행지체)	17
제 27 조 (공사의 도급)	18
제 28 조 (빈원처리)	19
제 29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20
제 30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
제 31 조 (공사책임감리)	20
제 32 조 (현장관리책임자)	21
제 33 조 (시설투자의 완료)	21
제 34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21
제 35 조 (준공전 사용)	22

제 6 장 수익률 및 사용료

제 36 조 (사업수익률)	23
제 37 조 (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 수입)	23
제 38 조 (최초사용료)	23
제 39 조 (사용료수입보장 및 환수)	23
제 40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절차)	24
제 41 조 (사용료의 정수 및 조정)	25

제 7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전 및 유지관리)	26
제 43 조 (쓰레기처리량 자료제출)	27
제 44 조 (운영비용)	27
제 45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28
제 46 조 (자금차입의 제한)	29
제 47 조 (보증대기질 및 보증수질 준수)	29

제 8 장 무안군의 지원

제 48 조 (재정지원)	29
제 49 조 (재정지원 절차)	30
제 50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31
제 51 조 (비재정적 지원)	31
제 52 조 (행정절차 추진)	32

제 9 장 불가항력 및 위험분담

제 53 조 (불가항력)	33
제 54 조 (불가항력의 제외)	33
제 55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이의 제기)	34
제 56 조 (불가항력 발생시의 조치)	34
제 57 조 (위험배분 원칙)	35
제 58 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5
제 59 조 (무안군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6
제 60 조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	37

제 10 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제 61 조 (협약의 중도해지)	39
제 62 조 (무안군에 의한 중도해지)	39
제 63 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40
제 64 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40
제 65 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41
제 66 조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41
제 67 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41
제 68 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43
제 69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44
제 70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45
제 71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액의 조정)	45
제 72 조 (배수청구권)	46

제 11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73 조 (권리의무의 양도)	47
제 74 조 (대체사업자 선정)	47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5 조 (분쟁의 해결)	48
제 76 조 (분쟁금액)	49
제 77 조 (중재)	49
제 78 조 (합의판할)	49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9 조 (비밀유지)	50
제 80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50
제 81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무안군의 협조)	50
제 82 조 (권리의무의 귀속)	51
제 83 조 (이익의 공유)	52
제 84 조 (협약의 변경)	53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53
제 86 조 (협약당사자의 협약준수 의무)	53
제 87 조 (일부무효)	54
제 88 조 (적용법규)	54
제 89 조 (완전합의)	54
제 90 조 (문서의 우선순위)	54
제 91 조 (해석)	55
제 92 조 (협약의 효력)	55
제 93 조 (경과 조치)	56

부 록

부록 [1]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58
부록 [2] 보험가입	60
부록 [3] 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수입	62
부록 [4] 운영비용	64
부록 [5]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65
부록 [6] 민간투자사업 실사계획 승인신청서	66
부록 [7] 착수신고서	67
부록 [8] 민간투자사업 준공보고서	68
부록 [9] 준공확인필증	69
부록 [10] 출자자의 지분율	70
부록 [11] 보증 대기질 및 보증 수질	71
부록 [12] 보조금 지급일정	75

별첨 [1] 재무모델(CD) 2매(별도첨부)

실시협약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이하 아래 정의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무안군과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 아래 정의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아래 정의 됨)에 따라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안군과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21-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매립용량 293,466m³ 규모의 매립장 및 부속시설
소각용량 45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및 부속시설과 부대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10톤/일, 재활용 시설 20톤/일

제 2 조 (정의)

- ① 본 협약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민간투자법령상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공사 감리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말하며, 운영설비의 경우는 제조검사자를 말한다.
 2.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7306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5. 공사기간 : 본 협약 제20조(공사의 착수)에 의한 공사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신청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도급계약 : 본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시설과 관련한 공사의 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7. 공사비 : 본 시설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하여 산정된다]를 말한다.
8. 공사준공일 : 준공확인필증상에 기재되는 준공년월일을 말한다.
9. 공사착수일 : 실시계획 승인 후 제20조(공사의 착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날을 말한다.
10.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관리운영권 :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무안군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말한다.
13. 금융완결 :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차입금 인출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14. 단가적용일 : 본 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단가를 적용한 날로서, 2004년 3월 31일을 말한다.
15. 대리은행 :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6.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7.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으로서 제6조(무상사용기간)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
18. 무안군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법률상의 지방자치단체인 무안군을 말한다.

19. 무안군수 : 주무관청으로 무안군의 군수를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20.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 : 본 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써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정식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설립예정법인을 말한다.
21.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 일인 2004년 3월 31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 예상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첨 [1](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2.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747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말한다.
23.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한다.
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5-12호(2005년 4월)의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5. 법령 :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조약, 협약, 고시 또는 법의 효력을 결정, 조례, 명령 혹은 기타 협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 등을 말한다.
26.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제정지원)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며,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27.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차 제안공고 내용)에서 정한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28. 본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9.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해지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30. 본 사업시설 : 본 사업에 필요한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1.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32. 부속시설 : 환경관리 종합센터 시설의 운용 및 그 기능 발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기능시설을 말한다.
33. 분기 :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34. 불가항력 :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서,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하며, 제53조(불가항력)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단,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5. 사업 기본시설 : 본 협약에 따라 실시설계에 따라서 본 사업시행지에 설치되는 매립시설(293,466㎡) 및 분출시설, 소각시설(45톤/일), 음식물 처리시설(10톤/일), 재활용 시설(20톤/일) 등 사업시행자가 건설·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36. 사업계획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8월 30일자로 무안군수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말한다.
37. 사업수익률 : 무안군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장 제3.2절의 가.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함수 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을 말한다.
38.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설립 예정법인)를 포함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그 적절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39.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하여 무안군수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0. 사업연도 :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단, 운영개시 년도의 경우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41. 사용료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무안군의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대가로 무안군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사업시행자의 총 민간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회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42. 사용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무안군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용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43.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738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44.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75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

로 대체된다.

45. 시공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6. 시설물안전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694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말한다.
47. 시설사업기본계획 : 무안군 공고 제2004-473호(2004년 12월 31일)호의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민간투자사업제3차계획공고”를 말한다.
48.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한다.
49. 실시설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및 도면 등을 말한다.
50. 영업준비금 : 본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개업비 등 필수 경비를 말한다.
51.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본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실제로 본 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다만,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본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52. 운영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무상사용기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영개시 일로부터 본 협약 제6조(무상사용기간)의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53. 운영설비 :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 등을 말한다.
54. 위험물 :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5. 유물 : 대한민국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56. 유지관리 : 완공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7. 인·허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제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동의·인가·승인·승낙을 말한다.
5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대한민국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제2200.04-147-18호)을 말한다.

59.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공투자회사, 조합, 신탁, 마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60.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1. 자금차입계약(들)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등이 체결한 계약(들)을 말한다.
62. 재무모델 : 별첨 [1](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모델을 말한다.
63. 전기사업법 : 대한민국 법률 제284호 전기사업법을 말한다.
64. 전력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6673호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한다.
65. 전문기관 : 회계법인 또는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66. 정부 :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67. 제세공과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시행·준공, 동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68. 준공확인필증 : 제34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따라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69.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무안군 조례 제1329호의 무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무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0. 지장물 : 본 사업의 공사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유형의 지상 또는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1. 책임감리자 : 본 사업시설에 관한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본 협약 제31조(공사책임감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2.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중 정부와 무안군이 재정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
73.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운영개시일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73. 총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제1항의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을 의미하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74. 총선순위채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자금 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자금차입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등 포함)을 말하며, 제금융차입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총선순위채무는 최초 자금차입계약의 만기, 이자율, 수수료를 등의 조건을 한도로 한다. 단,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자금 차입계약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금액은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5. 추정사용료수입 : 부록 [3](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 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기간 중에 매 사업연도의 본 사업시설의 추정 사용료 수입액을 말한다.
76. 출자자 :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7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7315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말한다.
78. 협약당사자 : 무안군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79. 회사채유통수익률 : 회사채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A+이고, 잔존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회사채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② 본 협약 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의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및 조례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및 조례를 말하고,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이 있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및 조례를 포함한다.

③ 감리자, 대주단, 사업시행자, 시공자, 무안군수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직범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무안군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부여한다.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 ① 무안군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는 권한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4.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기간동안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한
 5.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법인의 설립)제4항 단서에 따라 무안군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 ②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안군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5 조 (사업시행범위)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사업시설을 설치·건설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제 6 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으로 하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 ② 본 사업기간 동안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불가항력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본 협약상의 의무준수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시설의 조기 준공시에는 제34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확정하고 운영개시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그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준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준공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기준공일로부터 사용료 수입을 소유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비에 따라 직접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무안군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동종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의 보험조건(부보 가능한 불가항력 등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부록 [2](보험가입)에서 제시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무안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업무감독)

- ① 무안군수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무안군수는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의 규정에 의해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리자 감독업무를 시행한다.

제 10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무안군에 귀속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제 11 조 (출자자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10](각사별 출자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중 지분을 5%이상인 주주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주주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무안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안군은 그 승인여부를 객관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주주인 회사의 계열회사간 주주변경 또는 지분변경인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건설기간중 지분이 5%미만인 주주는 무안군의 사전승인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수에게 주주변경 및 지분변동 내역 등을 변경, 매각,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주주 또는 해당 주주의 지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무안군수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무안군수에게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책임과 의무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 ② 본 협약 체결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 13 조 (협약의 성신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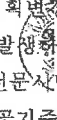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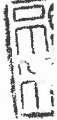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4 조 (총사업비 또는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 [1](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과 같이 32,786백만원(2004년 3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총민간사업비는 20,132백만원(2004년 3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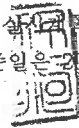
제 15 조 (총사업비 변경)

-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로 한다.
 2. 무안군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및 시설계획의 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개정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허가기관, 감사, 확인기관 등 관계기관 요구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5. 공사기간 중 발견된 위험물 처리 및 유물의 보전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제반비용
 6.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불가항력 사유 기타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8. 협상시 정산(갑리비, 한전위탁공사비, 복토개 등)하기로 한 비목이 증감되는 경우
 9. 협상시 조정, 삭감 등을 협의한 공종이나, 비목이 착오로 반영된 경우.
 10. 본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가가치세면상 면세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11. 대법령의 증가 및 관련법규의 적용으로 추가적인 장비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12. 기타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증감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단, 공사비 변경인 경우는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 내역물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무안군은 제48조(제정지원)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보조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실 시 절 차

제 16 조 (법인설립과 출자)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에 총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자 및 그 지분율은 부록 [10](자 사별 출자 지분율)과 같으며, 사업시행자는 출자자가 그 지분율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 납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할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각 출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안군수에게 부록 [6](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안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무안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자료 보완기간은 제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공사비)

- ① 본 협약 체결시 총공사비는 28,900백만원(VAT는 제외)으로 한다.
- ② 공사비의 변경은 본 협약 제15조(총사업비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1차에 한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무안군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1항의 공사기간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 ③ 불가항력 사유나 정부 및 무안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④ 제15조(총사업비 변경)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으로 정한 공사 일정에 따라 본 시설의 공사를 착수 및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공사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조(총사업비 변경)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착수를 연기할 필요를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5일 이전에 착수신고서를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무안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일정, 품질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공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 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무안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공사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 추진현황을 감리자에게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무안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 ① 무안군은 본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급금이나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 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인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위험물의 발견)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협약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는 이를 즉시 무안군에 통지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무안군과 사업시행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등과 관련된 인·허가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안군이나 관계기관이 행하는 본 사업 부지에 대한 출입, 시설의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등으로 인한 관련사항 및 처리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19조(공사기간)에 의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4 조 (유물의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에 유물발견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물을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의 유물발견 사실 보고 이후 15일 이내에 동 유물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유물발굴은 무안군 및 관계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

반사항은 유물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유물의 보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물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이 초래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제19조(공사기간)에 의거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사업비 중 영업준비금, 제세공과금, 부대비 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무안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안군수는 30일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무안군이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무안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하여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된 경우, 무안군은 제1항의 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업이행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완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완공일) 다음 날부터 본 사업시설의 완공시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를 무안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준공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하여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누적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안군수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무안군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이행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제 27 조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자를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 후 즉시 이를 무안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무안군수에게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한 공동이행 내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도급자가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 등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공과정에서 채분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분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⑧ 무안군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어떠한 면에서도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에 계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무안군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8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본 사업의 위치 변경 등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제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2. 시공민원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 본 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의 경우는 무안군이 직접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무안군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본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공민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작위나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수령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음·진동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방음벽 및 저소음 기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29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무안군수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무안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안군수는 이를 직접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30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무안군수는 본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무안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위임 및 위탁을 받은 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31 조 (공사책임감리)

- ① 무안군수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봉지하고,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이 봉지한 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② 무안군수는 관련법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

의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수가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무안군수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현황을 협약 당사자에게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시로 제시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며, 무안군수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 교체 등 필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감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안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감리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안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무안군수와 책임감리의 공사 감독과 관련된 본 협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현장관리책임자)

사업시행자는 협약시 확정된 직급이상의 현장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책임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 33 조 (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4 조 (준공 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시운전 1개월 전에 무안군수 및 책임감리자에게 종합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시설별로 준공이 진행되는 경우 시설별로 진행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15일(관련부서 협의기간 제외)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한 공인기관의 검사결과(시험성적서 등)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확인한 준공조서를 첨부한 부록[8](민간투자사업 준공보고서)의 민간투자사업 준공보고서를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무안군수는 준공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미비사항 보완기간 제외) 이내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조기준공을 포함한다)을 교부 받은 후 즉시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무안군수와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등록, 운영개시일 결정,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 규정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준공전 사용)

① 무안군은 지역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제34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규정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기를 단축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안군수는 책임감리자로부터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준공전 사용인가 여부를 결정 한다.

② 준공전 사용승인이 나는 경우 무안군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준공후 사용승인이 난 경우에 준한다.

제 6 장 수익률 및 사용료

제 36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로서 7.00%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수입)

① 본 시설의 추정쓰레기처리량수입은 부록[3](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수입)에 제시된 연도별 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수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 연구, 개발, 영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광역화가 무산될 경우에는 제38조(최초사용료)항의 방식과 제39조(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 38 조 (최초사용료)

① 최초사용료는 본 협약 제36조의 사업수익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함수관계식에 근거하여 본 협약체결시점에서 [부록5]와 같이 2004년 3월 31일 불변가액 기준으로 확정하고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누적 적용하여 운영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② 본 협약에 따른 총사업비, 운영비용, 재정지원의 변경으로 최초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수익률 및 사용료결정의 함수관계식의 적용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해석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해석에 따라 함수관계식을 재계산하여 사용료를 재 산정하기로 한다.

제 39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① 무안군은 무상사용기간 동안 당해연도 실제사용료 수입이 2004년 3월31일부터 당해연도까지의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을 반영한 추정사용료 수입에 다음 각호와 같이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보상 또는 환수한다

1. 운영개시후 5년간은 80%까지, 120% 초과시

- 2. 운영개시후 6~10년은 70%까지, 130% 초과시
- 3. 운영개시후 11~15년은 60%까지, 140% 초과시

- ② 제1항에 따른 추정사용료수입 미달분 보상 및 초과분 환수금액 결정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과다, 과소 투입된 처리비용에 포함된 운영비는 실비로 정산하여 위 보상액 및 반환액에서 공제한다.
- ③ 무안군이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수입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해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보조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이 환수해야 할 사용료수입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무안군에 그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간에 사용료수입의 환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⑤ 무안군은 환수해야 할 초과사용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수분을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재정지원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무안군은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한운영수입의 80%미만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달원인 및 대책방안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0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수입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의 사용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무안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무안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전항의 자료를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9조(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현금으로 보상에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액 지급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 익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단 익년도 2월말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말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동수익률의

이자율 가산 지급한다.

- 2. 사용료 조정이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동의한 경우 검토일로부터 1개월내 제50조(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③ 환수해야할 초과 사용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 사업연도의 사용료수입에 관한 자료를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면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수금액을 결정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및 지연이자는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 41 조 (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쓰레기 측정량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사용료를 익월 7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이내에 무안군에 청구하기로 하며, 무안군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무안군이 사용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용료 지급기간 종료 익일부터 회사채유동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1회(매년 1월 1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하며, 사전 무안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 항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한다.
- ⑤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정기적 조정 외에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시설의 운영비 및 총 민간사업비의 회수 등을 고려하여 부정기 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무안군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7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전 및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시설준공 후 무상사용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9조(공사기간)에 규정한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른 연장기간 포함) 3개월 전까지 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안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무안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유지,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무안군수는 본 시설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무안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⑤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키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무안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사

업시행자는 위탁 및 대행시 이를 이유로 본 협약상에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쓰레기처리량 자료제출)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입(매립 포함)·유출 지점에 설치된 측정계기(계근대)를 매일 기록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안군수는 쓰레기 유입·유출량 등의 확인 및 계근 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44 조 (운영비용)

- ① 본 협약 체결시 운영비용 등의 내역은 부록 [4](운영비용)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분별 운용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무안군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른 운영비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운영비용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운영비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4](운영비용)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하고 무안군이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4. 제15조(총사업비 변경)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부록[4](운영비용)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⑥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부지내에 상수도가 공급 되어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비용에 추가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⑦ 본 사업의 1차 처리한 침출수 처리는 운반비용을 포함하여 무안군의 부담으로 하며, 향후 하수도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무안군이 부담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3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지출계획서와 전년도 운영비 등 집행내역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종합처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 무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무안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통해 얻은 매 사업연도의 세후 순수익은 본 협약 제39조(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기준이 되는 실제 사용료 수입에 포함된다.
- ④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권은 (이에 부수되는 수익과 비용 포함)무안군에서 소유한다.

제 46 조 (자금차입의 제한)

- 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법인설립과 출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차입 이외의 추가 자금차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에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금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설 건설을 위한 차입자금을 제외한 무안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차입자금은 제68조(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내지 제70조(중도해지시 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총선순위외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7 조 (보증대기질 및 보증수질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1]의 보증대기질 및 보증수질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증대기질 및 보증수질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운전방법의 조정, 시설·장비의 개선을 통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법령위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운영관리 하자 등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1차 처리한 침출수의 수질(연계수질)이 보증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무안군수는 배출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05. 8)에 의거한 초과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부과 및 징수 방법은 동 업무편람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무안군의 지원

제 48 조 (재정지원)

- ① 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12]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회사채유동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불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무안군이 본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료부터 본 사업과 관련한 부담금,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협의하여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36조(실질수익률)의 실질수익률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무안군은 민간투자법 제53조(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무안군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본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무안군수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무안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9 조(재정지원 절차)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무안군은 재정지원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무안군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무안군은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된 후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③ 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있어 제40조(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절차)에 따른다.

④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무안군의 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동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무안군은 건설기간중 총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시일 이후에 지급될 경우, 동 지급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급금이 무안군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0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①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준공 전·후 불변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한다.

1. 공사시행 중 또는 완공 후 무안군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무안군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협약당사자가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공사 준공까지의 총민간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 협약의 제15조(총사업비 변경)제4항 및 제48조(재정지원)에 따른다.

②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등을 조사 하도록 하며, 협약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을 본 협약에 따른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동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산정결과를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문시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등을 조사토록 하는 경우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51 조 (비재정적 지원)

- ① 무안군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인·허가 등 관련기관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무안군은 본 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이행에 협조한다.
- ③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 내의 국, 공유재산을 본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종합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⑤ 운영기간 중 2단계 차수시설은 무안군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며, 본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 52 조 (행정절차 추진)

- ①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규정한 행정절차 이외의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 ②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동법 제17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무안군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협의시 필요한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제 9 장 불가항력 및 위험분담

제 53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사항 등을 말하며, 정치적 위험 및 비정치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 ① 정치적 위험
 - 1.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 정치적 폭력사태
 -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또는 불능
 - 3. 민간투자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 ② 비정치적 위험
 - 1. 지진, 홍수,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을 천재지변
 - 2. 전국적 또는 산업전반의 전국적 노동쟁의
 - 3.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예측할 수 없는 위험물이나 지하지장물 및 유물의 발견,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폭발 및 화재,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 54 조 (불가항력의 제외)

- ① 본 협약 제53조(불가항력)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은 명백히 다음의 조건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계 및 장비(부품 및 기타 소모품을 포함한다), 기타 설비, 전력, 용수 등의 부족 또는 노후화, 조달지연, 고장 등
 - 2. 협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및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협약당사자의 의무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민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 55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이의 제기)

-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 또는 협약당사자간 통지수단이 재개된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의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객관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불가항력의 발생을 통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지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 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6 조 (불가항력 발생시의 조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해결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완화 또는 치유조치를 취함에 있어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위험이 합리적으로 배분

되도록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장 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제 57 조 (위험배분 원칙)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무안군 귀책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 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어느 협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위험인 경우에는 해당위험의 관리비용을 공유하고, 더 효율적인 협약당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은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위험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8 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무안군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소홀, 시설관리 태만
4.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정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노력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지연, 공사지연 또는 중단,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증가, 사용료 수입 등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부실공사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안군은 제62조(무안군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본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제26조(사업이행지체)에 따른 사업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제 59 조 (무안군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무안군 귀책사유로 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무안군의 요구(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포함)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지연 등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공사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 비목의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시, 전문시방시, 설계기준 및 지침에 한함)의 체·개정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 등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4. 무안군의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단, 무안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민원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절차의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공사기간중 무안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본 협약 제15조(총사업비 변경)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3. 운영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50조(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운영기간중 무안군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부록 [3](추정 쓰레기처리량 및 사용료수입)에 명시된 추정사용료수입에서 실제 사용료수입 및 운영비용의 절감분을 공제한 금액, 이하 손실이라 함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을 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협약당사자는 재정지원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무안군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63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동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수에게 사업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0 조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

① 불가항력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

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해소하되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②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 개시일을 연장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무안군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무안군이 부담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10% 부분은 사용료의 인상 또는 무상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재 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 조 제2항 제2호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제39조(사용료 수입 보장 및 환수)에 의한 사용료 수입 보장 및 환수기간중 인 경우 등 손실을 보상한다.
 - 나. 제39조(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에 의한 사용료 수입 보장 및 환수 기간중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기간 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무안군은 무안군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여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정용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 10 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제 61 조 (협약의 중도해지)

본 협약은 제67조(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종료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협약 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무안군에 의한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자격의 박탈
2.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안군의 협약 해지
3. 무안군 귀책사유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협약 해지
4. 불가항력에 의한 협약의 종료
5. 협약당사자 상호협약에 의한 협약의 종료

제 62 조 (무안군에 의한 중도해지)

① 무안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의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경우
2.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정한 경우 등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실시계획 승인 유효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또는 대출확약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② 무안군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6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 할 수 있다.

제 63 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안군수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약은 동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고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당사자간 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무안군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 2. 무안군 귀책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3. 본 협약에 따라 무안군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4. 본 사업기간 중에 본 시설과 유사한 처리시설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본 시설의 반입 쓰레기량에 현격한 변동이 생겨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본 협약에서 정한 무안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안군이 해당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6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 64 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3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한 것인지, 본 협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 통지

가 도달됨으로써 종료된다.

-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 2.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제 65 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 ① 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12장 본정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중재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 66 조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기간 중 언제든지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 67 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61조(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6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제7조(사업시행자의 의무)의 의무도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 6개월 전에 무안군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 및 운영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종료와 동시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무안군에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제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및 보수, 교체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무안군에 인계되는 본 사업시설 및 설비자산과 기타 물품은 서명된 약정서에 기록하여 무상으로 이양한다.
4. 무안군은 제1호에 의한 점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무안군은 본 사업시설과 설비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반환요건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무안군이 통지한 거부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의의가 있는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분쟁 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본 사업시설과 설비의 인수가 무안군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의 철수 요청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존과 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안군의 시설 및 설비 인수 거부가 본 협약에 의거하여 분쟁처리 절차에 의뢰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용료수입으로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를 제외한 잔여익을 대주단 주관사 은행(무안군을 수익자로 하는 관리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구좌를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무안군의 반대로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 수익 잔여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6. 위 5호의 예치금 및 위탁수수료는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로 법원이 판결 또는 중재원이 재결한 바에 따른다.
7. 무안군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안군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과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8 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 규정)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무안군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여 무안군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금융협약 등 모든 계약을 무안군 또는 대체사업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무안군에 귀속되고 본 협약에 의해 설정,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책임, 무상사용기간 등이 종료된다.
- ④ 무안군은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지 직전의 사용료 부과 및 청구 등과 관련한 계약체결 또는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은 무안군에 대가없이 귀속된다.
- ⑤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로서 무안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안군수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에게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무안군의 관리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등을 무안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본 협약의 해지 및 종료는 그 효력 발생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무안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무안군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9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 ① 무안군은 제70조(중도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총선순위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권에서 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차입원리금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에 의한 대주단에 지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 중 해지시점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차입원리금(연체료(차입원리금에 대한 정상이자 초과분) 등 사업시행자의 채무는 제외됨)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에 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합의 선정하여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는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통보하고, 협약당사자는 통보된 해지시 지급금을 인정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전문기관에 지불하는 관련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100% 부담하고 불가항력이나 협약당사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50:50으로 부담한다.
- ④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해지효과가 발생하는 날 또는 무안군이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이하 "해지일" 또는 "매수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 및 매수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해지일(또는 매수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무안군이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금융협약 상의

총선순위채무를 제68조(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또는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총선순위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일(또는 매수일)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는 금융협약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무안군이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는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 없이, 세금 또는 세금을 이유로 하거나 상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제 70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제62조(무안군에 의한 중도해지), 제63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제64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의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 무안군은 아래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 선순위채무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해지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¹⁾	좌동의 상환금액 ⁴⁾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표준차입이자율(A) ²⁾]	좌동의 상환금액과 미래기대수익환가 ⁵⁾ 를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⁶⁾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상 동
무안군 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경상수익률 ³⁾ (B)]	상 동

-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 2) 건설기간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정액법에 의해 상각후 잔액
-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
- 6) [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 + [미래기대수익환가×(잔여운영기간 비율)]

제 71조 (중도해지시 지급금액의 조정)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무안군에 의해 본 사업이 매수되는 경우 제70조(중도해지시 지급금)에 의거 무안군수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이따

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무안군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무안군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2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금액은 가액산정 당시의 영업권을 포함한 잔여무상사용기간 기대수익을 사업수익률로 현재가치화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단,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으로 하며, 잔여무상사용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의 산정은 제70조(중도해지시 지급금)를 준용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시설의 보수 또는 재 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초과한 경우
 3. 본 협약에 정한 무안군 또는 관계기관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무안군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에 앞서 위협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 11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73 조 (권리의무의 양도)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본 협약상 권리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주단 또는 자산유동화 관련회사에 본 협약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구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무안군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제45조(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 74 조 (대체사업자 선정)

- ① 무안군이 제61조(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간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지급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무안군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무안군은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무안군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또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 따라 무안군이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

자를 결정하는 경우 등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무안군과 동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금(들)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본 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유지보수, 운영 및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산, 재산 및 권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함이 없이 그리고 제81조(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무안군의 협조)제1항에서 허용된 담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보도 설정함이 없이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 ⑤ 대체자는 본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본 협약당사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보수 또는 운영과 관련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의 다양한 자산, 권리 및 의무가 대체기관에 귀속,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책임, 부채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무안군은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무안군과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른 대체의 후속조치로,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체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즉시 본 협약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의무를 비롯하여 본 조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대주단과 합의하는 양식으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에 제공한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5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분쟁을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77조(중재) 내지 제78조(합의관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76 조 (분쟁금액)

- ①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지급이 명시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분쟁의 해결시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의 관해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그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회사채유동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7 조 (중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재판소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협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협약당사자는 중재부에 제시된 증거나 분쟁사유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 ③ 중재비용은 중재관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④ 중재인의 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을 위한 법원의 선고를 요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증서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78 조 (합의관할)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 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성결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9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위치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4. 관정위원회,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③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 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제 80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법령에 의한 인정 포함)에 따르며,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81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무안군의 협조)

- ①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 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무안군은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거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선정해 주며, 등록된 근거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거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대출 여부 및 대출조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무안군의 확인후 대리은행에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 후, 무안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2. 사용료 산정 및 조정 기준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률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 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7.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④ 무안군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 82 조 (권리의무의 귀속)

- ①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무안군은 본 협약에 기한 모든 행위를 사업시행자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무안군이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대표회사에게 행한 모든 행위는 사업시행자의 각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무안군에 대하여 행하는 본 협약에 의한 모든 행위는 그 대표회사를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 상의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무안군은 이를 승인한다.

제 83 조 (이익의 공유)

- ① 본 시설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구조의 변경으로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익을 공유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의 이익 공유 비율은 50 : 50으로 하며, 공유이익 대상은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한다.
- ③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출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에 비해 채권부채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을 의미한다.
- ④ 공유이익의 측정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한다.
- ▶ '기본재무모델' : 기본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 ▶ '기준재무모델' : 기준재무모델은 공유대상이익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시킬 사유의 승인신청일까지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함
 - ▶ '비교재무모델' : 비교재무모델은 기준재무모델에서 공유대상 이익의 사유나 그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함
- ⑤ 자본조달 구조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정한 총 선순위 채무의 보장 한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 ⑥ 협약당사자는 합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공유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유이익에 대해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장 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제 84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합의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보장된 사업성익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와 사업시행자의 포괄 승제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6 조 (협약당사자의 협약준수 의무)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본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② 계약당사자는 자신이나 그 자산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면책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87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계약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8 조 (적용법규)

- ① 본 계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 89 조 (완전합의)

본 계약과 본 계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계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계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 90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계약과 그에 언급한 부록 기타 서류들은 본 계약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본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이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본 계약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 시설사업기본계획

제 91 조 (해석)

- ① 단수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② 본 계약상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④ 계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인,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 92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93 조 (경과조치)

관계법규 및 무안군의 제반행정조치가 본 사업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개정되는 경우, 무안군과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및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12월 23일

대한민국
무안군수 서삼



[Handwritten signature]

(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삼



한규환

[Handwritten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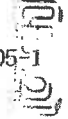


사업시행자의 출자회사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한다.

출자회사 : 대선건설 주식회사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내곡리 805-1

대 표 : 송영삼



출자회사 : 현대보비스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

대 표 : 한규환



출자회사 :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53-2

대 표 : 조해식



출자회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대 표 : 최동수



부록 [1]

총 사 업 비

[제14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1. 조 사 비	50	50	-	-
2. 설 계 비	730	146	584	-
3. 공 사 비	28,900	-	8,986	19,914
4. 보 상 비	-	-	-	-
5. 부 대 비	2,416	295	838	1,283
6. 운영설비비	229	-	-	229
7. 제세공과금	-	-	-	-
8. 영업준비금	462	67	221	175
총 사업비	32,786	558	10,628	21,600
9. 예 비 비	4,083	40	1,043	3,000
10. 건설이자	780	-	15	765
총 투자비	37,649	597	11,686	25,366

※ 총 사업비는 2004년 불변가격 기준(가격기준일 : 2004년 03월31일)

※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

총 민 간 사 업 비

[제14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1. 조 사 비	50	50	-	-
2. 설 계 비	567	446	421	-
3. 공 사 비	17,458	-	6,370	11,087
4. 보 상 비	-	-	-	-
5. 부 대 비	1,603	295	594	714
6. 운영설비비	133	-	-	133
7. 제세공과금	-	-	-	-
8. 영업준비금	321	67	156	98
총 사업비	20,132	558	7,542	12,033
9. 예 비 비	2,449	40	741	1,669
10. 건설이자	780	-	15	765
총 투자비	23,361	597	8,297	14,467

※ 총 사업비는 2004년 불변가격 기준(가격기준일 : 2004년 03월31일)

※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2]

보 험 가 입 [제8조 (보험가입) 관련]

1. 건설기간 중

구 분	용	비 고
가 입 보 험	1) 건설공사보험 (물적 손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2) 사업이행보증보험	
보 험 목 적 물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목적물 - 대인대물사고 보상비용 - 공사지역에 따른 이익상실(A.L.O.P) 2) 사업이행보증보험 -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보증	전위험 담보
보 상 내 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 등 - 현장사무소 및 공사용 자재 - 공사지역에 따른 이익상실 2) 사업이행보증보험(정의에 의함) - 총사업비의 10%에 대한 보증	
담 보 지 역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제안사업 건설현장 및 주변	
보 험 기 간	공사착수시점 ~ 공사완공시점	
보 험 금 액	① 공사목적물 : 예정공사금액 ②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상실분 ③ 사업이행보증보험 : 총사업비의 10%(정의에 의함)	

2.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입 보 험	1) 재산종합보험(PAR) 영업배상책임담보(CGL)포함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보 험 목 적 물	1) 재산종합보험 ①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 ② All Risks 담보로 면책조항을 제외한 모든 사고담보 ③ 기계적, 전기적 위험 ④ 기업휴지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 ⑤ 불특정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손해(CGL)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① 근로자 재해발생	
보 상 내 용	1) 재산종합보험(영업배상 책임담보 포함)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근로자 재해발생 보상	전위험 담보
담 보 지 역	환경관리 종합센터시설 및 부대시설	
보 험 기 간	운영기간	
보 험 금 액	① 재산종합보험 : 재 물 ; 공사비 기 계 : 기계장치 재 조달가액 기업휴지 : 고정비(인건비, 이차비용) ②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③ C.G.I. : 대인, 대물 일괄 10억원 보상한도액	

부록 [3]

추정 쓰레기 처리량 (제37조 관련)

(단위 : 톤/년)

년	도	합	계	음식물	재활용	매립	비고
1년차	2008년	28,851	13,500	3,000	6,000	6,351	
2년차	2009년	30,238	13,500	3,000	6,000	7,738	
3년차	2010년	32,392	13,500	3,000	6,000	9,892	
4년차	2011년	37,830	13,500	3,000	6,000	15,330	
5년차	2012년	37,429	13,500	3,000	6,000	14,929	
6년차	2013년	37,027	13,500	3,000	6,000	14,527	
7년차	2014년	36,626	13,500	3,000	6,000	14,126	
8년차	2015년	36,224	13,500	3,000	6,000	13,724	
9년차	2016년	35,823	13,500	3,000	6,000	13,323	
10년차	2017년	35,385	13,500	3,000	6,000	12,885	
11년차	2018년	34,983	13,500	3,000	6,000	12,483	
12년차	2019년	34,582	13,500	3,000	6,000	12,082	
13년차	2020년	34,180	13,500	3,000	6,000	11,680	
14년차	2021년	34,180	13,500	3,000	6,000	11,680	
15년차	2022년	34,180	13,500	3,000	6,000	11,680	
계		519,927	202,500	45,000	90,000	182,427	

부록 [6]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17조 관련)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신 청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시행위치			
사업시행규모			
사업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사업시행기간			
공정별 공사 시 행 계 획			
부대사업내용 및 시 행 계 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 안 군 수 귀 하			
※ 제출서류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부록 [7] 착수신고서(제20조 관련)

착 수 신 고 서

사 업 명 :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제안사업

사 업 비 : 〇〇 억원

실시협약일 : 〇〇 년 〇〇 월 〇〇 일

실시계획승인일 : 〇〇 년 〇〇 월 〇〇 일

준공예정연월일 : 〇〇 년 〇〇 월 〇〇 일

준공연월일 : 〇〇 년 〇〇 월 〇〇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〇〇 년 〇〇 월 〇〇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관리자 : (인)

무 안 군 수 귀 하

민간투자사업 준공보고서	
신 청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 법 인 주 소 : (전화번호:)
사 업 명	
공 사 의 종 류	
사 업 장 소	
총 공 사 비	
공 사 기 간	·착공 : ·준공 :
무 안 군 속 용 시 설 내 기 타	
<p>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공사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무 안 군 수 귀 하</p> <p>※ 제출서류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첨부서류</p>	

준 공 확 인 필 증	
시행자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번호 : 주 소 :
<p>귀하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 업 명 : 2. 위 치 : 3. 공사기간(준공일자) : 4. 준공시설(무안군 귀속여부) :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무 안 군 수</p>	

부록 [10] 출자자의 지분율(제16조 관련)

부록 [11]

보증 대기 질 (제47조 관련)

가. 가스상 물질

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계기준 보증치
◦ 암모니아(NH ₃)	100ppm 이하	10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0(12)ppm 이하	50(12)ppm 이하
◦ 염화수소(HCl)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10(12)ppm 이하	20(12)ppm 이하
◦ 염소(Cl ₂)	10ppm 이하	10ppm 이하
◦ 황산화물(SO ₂ 로서)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ppm 이하	30(12)ppm 이하
◦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100(12)ppm 이하	100(12)ppm 이하
◦ 이황화탄소	30ppm 이하	3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	10ppm 이하	10ppm 이하
◦ 황화수소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12)ppm 이하	2(12)ppm 이하
◦ 불소화물(F로서)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12)ppm 이하	2(12)ppm 이하
◦ 시안화수소	10ppm 이하	10ppm 이하
◦ 브롬화합물(Br로서)	5ppm 이하	5ppm 이하
◦ 벤젠화합물(C ₆ H ₆ 로서)	30ppm 이하	30ppm 이하
◦ 페놀화합물(C ₆ H ₅ OH)	10ppm 이하	10ppm 이하
◦ 수은화합물(Hg로서)	0.1(12)mg/Sm ³ 이하	0.1(12)mg/Sm ³ 이하
◦ 비소화합물(As로서)	0.5(12)ppm 이하	0.5(12)ppm 이하

주)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단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나. 입자상 물질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005년 1월 1일 이후	설계기준 보증치
• 먼지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80(12)mg/Sm ³ 이하	20(12)mg/Sm ³ 이하
• 카드뮴 화합물(Cd로서)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0.1(12)mg/Sm ³ 이하	0.1(12)mg/Sm ³ 이하
• 납화합물(Pb로서)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1.6(12)mg/Sm ³ 이하	1.6(12)mg/Sm ³ 이하
• 크롬화합물(Cr로서)	0.5(12)mg/Sm ³ 이하	0.5(12)mg/Sm ³ 이하
• 구리화합물(Cu로서)	10mg/Sm ³ 이하	10mg/Sm ³ 이하
• 니켈 및 그화합물	20mg/Sm ³ 이하	20mg/Sm ³ 이하
• 아연화합물(Zn로서)	10mg/Sm ³ 이하	10mg/Sm ³ 이하
• 비산먼지	0.5mg/Sm ³ 이하	0.5mg/Sm ³ 이하
• 매연	량궤단비탁표 2도 이하	량궤단비탁표 2도 이하

주)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단의 μm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다.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및 보증치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보증치

구분	2006년 1월 1일 이후	설계기준 보증치
배출기준(ng-TEQ/Nm ³)	5(12) 이하	0.5(12) 이하 (기대치 0.1)

- 주) : 1. 배출기준은 표준산소농도 12% 및 국제 독성등가환산계수로 환산한 농도임.
2. 시간당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적용

보증수질 (제47조 관련)

가. 폐수 처리수 보증수질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분	BOD(mg/L)	COD(mg/L)	SS(mg/L)	T-S(1)(mg/L)	T-P(mg/L)	대장균군수(개/ml)	비고
특정지역 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1이하 (1이하)	2이하 (8이하)	3,000이하	겨울철(12월~3월)은 팔호안의 수질 적용

1)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하나 BOD, COD, SS등은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한강수계지역(잠실수중보편역을 제외한다) · 낙동강수계지역 · 금강수계지역 ·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지역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한다.

2. 폐놀류등 오염물질

항목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비소	시안화물	로듐	유리성현탁물질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용해성망간염류	총부오르	P	온	트립티콜로모노에틸렌	페리콜로모노에틸렌	방사능
		유류	지류																			
가	5.8~8.6	5이하	30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이하	40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 1) 영산강수계 무안지천1, 무안지천2는 환경기준II등급을 적용받는 지역으로서 '가'지역에 해당된다.
2) 색도항독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원프, 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침출수 처리수 보증수질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 분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대장균수 (개/ml)	비 고
원수 기준	1,507이하	2,042이하	478이하	832이하	17이하	-	혼합수질 적용
연계수질기준	1,055이하	1,430이하	143이하	749이하	5.1이하		협의수질(1차처리후)

1)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하나 BOD, COD, SS등은 무안분뇨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무안군과 연계수질을 검토한 결과 1차 처리후 분뇨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하여 협의수질을 계획수질로 적용한다.

2. 폐놀류등 오염물질

구 분	수소		노닐알콜		페놀류		시안화물		크롬		유해성질		아연		구리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유해성질		중금속		P C B		총대장균		색		비리콜로		대장균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농도			
가	5.8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0.3 이하	0.1 이하																			

- 1) 방류수계인 사마천(무안읍)은 환경기준II등급을 적용받는 지역으로서 '가'지역에 해당된다.
- 2)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의 연계수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부록 [12]

보조금 지급일정 (제48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가액		정상가액		비 고	
	보조금	소 계	보조금	소 계		
2006년	1/4분기	760	760	822	822	
	2/4분기	750	750	820	820	
	3/4분기	750	750	828	828	
	4/4분기	826	826	920	920	
2007년	1/4분기	2,646	2,646	2,976	2,976	
	2/4분기	2,773	2,773	3,150	3,150	
	3/4분기	2,965	2,965	3,401	3,401	
	4/4분기	1,184	1,184	1,372	1,372	
합 계	12,654	12,654	14,288	14,288		

- ※ 불변가액기준일 : 2004년 3월 31일
- ※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